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-951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2010. 1. 1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대상 신설(안 제2조)
  - 2010.1.1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 
(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규정)
- 나.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(안 제3조)
  -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%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
- 다. 징수촉탁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 신설(안 제3조의2)
  - 개인별 징수포상금 지급한도 현행유지
- 라. 「알기쉬운 법령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일부 표현 변경

## 3. 개정근거

- 가.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 시달
  -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-909(2010. 3. 4)
  - 서울시 38세금징수과-5709(2010. 3.10)

**4. 조례안 : 따로 붙임**

**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**

**6. 기타사항**

가. 입법예고 : 2010. 7. 15. ~ 8. 4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0.8.26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”를 “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”로 한다.

4.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

제3조제4호 중 “10만원이상 30만원이하”를 “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탈루세액등”을 “탈루세액 등”으로 각각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

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“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”를 “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7호의”로 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3분의2이상의”를 “3분의 2 이상의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이중부과등”를 “이중부과 등”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생략) 1.~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3조(지급기준) (생략) 1.~3. (생략)</p> <p>4.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<u>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</u>. 다만, 「공무원제안규정」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·공제받은 세액(이하 “탈루세액등”이라 한다)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이 경우 “중요한 자료”란 「국세기본법」 제84조</p>	<p>제3조(지급기준)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“탈루세액 등”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

현행	개정안
<p>1.~2.(생략) ② (생략)</p>	<p>1.~2.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④ (생략)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<u>3분의2이상</u>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⑥ (생략)</p>	<p>제4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<u>3분의2 이상</u>의 -----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환수) ① (생략)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<u>이중</u> <u>부과</u>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8조(환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이중부</u> <u>과</u> 등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